

경 고 장

소 속 : 예 천 군
직 위 : 예 천 군 수
성 명 : 이 현 준

귀하는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사업 등 군정 주요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
그러면 경북도청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예천군 송곡지구 신규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청 직원들로 구성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군유임야를 매각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마을정비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고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한 수익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정비조합과 수익계약으로 군유지를 매각하였고, 조합원 자격이 없는 도청 직원들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에 설립인가를 해주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고 관의 위신이 실추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이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(성실의 의무)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「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라 “경고” 처분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11. 16.

경 상 북 도 지 사

